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29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의원)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

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유족연금등”이라 한다)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편한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취지와 다른 직역연금에서의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동순위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유족연금등이 각자에게 균분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망인에 대한 양육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상속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된 유족과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던 유족이 서로 동순위 수급권자로서 유족

연금등을 균분 지급받게 될 경우 야기될 형평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등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비교하여볼 때 유족연금등 수급권의 제한 절차, 대상 및 급여액 등이 서로 다른바, 국민 정서와 보편적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족연금등의 수급권 제한 사유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되도록 다른 직역연금의 입법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안 부칙에는 「민법」 제1004조의2가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에 맞추어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 외에 안 제82조제3항제4호의 적용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어느 시점 이후의 유족연금등 급여분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 안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등의 지급이 제한될 경우 그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등을 환수할지 여부와 환수할 경

우 이자를 가산할 것인지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맞추어 현행법 제57조제1항의 환수 사유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이자 가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